



日韓／韓日対話 第6回企画 コロナ禍が日韓の大学
教育にもたらしたもの ―― (韓国) チョン・ビョン
ホ、 (日本) 光本滋の論考をもとにした対話――

정, 병호

光本, 滋

多胡, 太佑

肥後, 耕生

(Citation)

コロナ禍が日韓の大学教育にもたらしたもの

(Resource Type)

other

(Version)

Author's Original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0100485228>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록금반환 관련 소송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 지난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초유의 비대면 교육 상황을 경험한 대학생들은 교육서비스와 교내 시설물에 대한 정상적인 이용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 내지 감액 요구
- 대학과 교육 당국에서 대응을 하지 않자 일부 대학생들이 소송 제기
- 대학생들의 소송은 두 가지
 - 1)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 제3조가 학생이 교육서비스와 시설 이용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위헌심판청구**
 - 2) 대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법인들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II. 위헌심판청구(헌재 2023. 7. 20. 2020헌마434 결정)

1. 소송 경과

2020.3.22. 헌법재판소 접수, 2020.3.31. 심판회부, 2023.7.20. 결정

2. 청구인의 주장

- 심판대상조항인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은 코로나 19사태의 경우 등록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학생과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받는 학생을 차별하고 있고, 등록금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 제4항에 해당하는 휴학자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휴업자와도 차별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심판대상조항 때문에 일반 대학교는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하면서도 사이버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어 그 차액만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II. 위헌심판청구(헌재 2023. 7. 20. 2020헌마434 결정)

3. 쟁점

대학이 교육서비스와 교내 시설물에 대한 정상적인 이용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심판대상조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된 것)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하 생략)

II. 위헌심판청구(헌재 2023. 7. 20. 2020헌마434 결정)

[관련 조항] 2020. 10. 20. 개정 전후 고등교육법 제11조 비교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② (생략)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p>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이 되도록 한다.</p>	<p>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p>

II. 위헌심판청구(헌재 2023. 7. 20. 2020헌마434 결정)

[관련 조항] 2020. 10. 20. 개정 전후 고등교육법 제11조 비교

<p>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u>존중하여야</u> 한다.</p>	<p>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u>반영하여야</u> 한다.</p>
<p>⑤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p>	<p>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⑦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이하 생략</p>

II. 위헌심판청구(헌재 2023. 7. 20. 2020헌마434 결정)

4. 결정요지(부적법 각하)

-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다니던 대학교로부터 이미 납부한 2020년 1학기 등록금의 일부(2020년 1학기 등록금 4,199,000원의 7.14%에 해당하는 300,000원)를 코로나-19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돌려받았고, 곧바로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도 더 이상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 청구인의 권리가 구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 또한 고등교육법이 2020. 10. 20. 개정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학교시설의 이용제한이나 학사운영의 부실 등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III. 등록금환불소송

1. 1심 (2022. 9. 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2020가합559003 판결)

(1) 사건 개요

2020년 1학기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시된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한 대학생들이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각 100만원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 10만원씩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당사자

1) 원고

당초 원고 임OO 외 2850명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총 2851명임을 전제로 하여 소장 청구취지란에서 위 원고들을 번호로 특정함. 그러나 위 원고들 중 154명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소를 취하하여,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원고들은 원고 임OO 외 2696명, 총 2697명만이 남게 됨.

2) 피고

숙명학원 외 25개 학교법인 및 대한민국

III. 등록금환불소송

(3) 법원의 판단(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

1) 피고 학교법인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 학교법인들이 법적 근거 없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함으로써 원고들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적 근거: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
- 비대면수업이 원고들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III. 등록금환불소송

1) 피고 학교법인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나) 피고 학교법인들이 부당하게 이월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월금 및 적립금 적립은 법령을 준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 학교법인들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경우 등록금 중 일부라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부 반환의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당시 시행중이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나 2020. 10. 20. 개정, 2021.1.21. 시행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4항에서도 등록금감면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인 규정)
- 신의칙 내지 조리에 근거한 등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III. 등록금환불소송

1) 피고 학교법인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라) 피고 학교법인들의 '비대면수업' 실시 등에 대한 위법성 또는 귀책사유 인정 여부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과 그 방역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지침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피고 학교법인들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III. 등록금환불소송

2) 피고 학교법인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학교법인들이 지급받은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 현저히 부실한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해당하지 않음

나)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일부불능을 이유로 한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 교육서비스 제공의무 일부의 불완전이행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부 이행불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일부불능의 경우 일부무효는 전부무효라는 민법 제137조를 근거로 전부불능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각 재학계약 전부가 무효로 될 터인데, 원고가 각 재학계약 전부의 소멸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법리상 모순된다.

III. 등록금환불소송

2) 피고 학교법인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다) 피고 학교법인들이 지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실험실습비' 및 '학생활동 지원비' 상당액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 학교법인들이 원고들로부터 등록금을 지급받을 때에 위와 같이 각 금원의 명목이나 사용처를 특정하여 지급받지 않음.
- 학교법인들이 내부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면서 사용 목적을 구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목적에 따른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 학교법인들이 등록금 중 상당액을 부당하게 이득한 것이 된다거나('이월금' 적립), 원고들에게 해당 금원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

III. 등록금환불소송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교육부장관의 비대면수업에 대한 지도·감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17조는 교육부장관의 비대면수업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라는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인정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있다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도 교육부장관의 법률상 권한에 관한 규정이지 그 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III. 등록금환불소송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나) 교육부장관의 등록금 반환 대책 미수립 또는 등록금 반환 미권고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2020학년도 1학기 전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2020. 10. 20. 신설된 고등교육법 제11조 제4항에서 등록금 감면을 강제하지 않음
-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령에 비추어, 피고 대한민국이나 교육부장관이 피고 학교법인들에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강력하게 권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한 부작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있다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도 교육부장관의 법률상 권한에 관한 규정이지 그 의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III. 등록금환불소송

4) 결론

-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이 2020년 초경 갑자기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이 2020학년도 1학기 각 대학교에 재학하였던 학생들로서는 당초 꿈꾸고 기대하였던 모습의 대학생활을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하지만 이제까지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의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학교법인들이나 피고 대한민국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III. 등록금환불소송

(2) 2심(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23. 7. 6. 선고, 2022나2038770 판결)

1) 당사자

가. 원고

피고 학원에 재학한 대학생들 180명

나. 피고

숙명학원 외 8개 학교법인 및 대한민국

2) 청구취지: 1심과 동일

3) 1심에서 제외했던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가

항소심법원은 이것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판단.

III. 등록금환불소송

(2) 2심(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23. 7. 6. 선고, 2022나2038770 판결)

4)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은 결론이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모두 기각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① 비대면수업은 대면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그 방식에서 사소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과 내용에서 중대한 차이가 있으며, 실제 한양학원의 일부 교원이 수업 부실이행에 관하여 징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 피고 학교법인들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하여 위 원고들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 또는 현저히 부실한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III. 등록금환불소송

(2) 2심(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2023. 7. 6. 선고, 2022나2038770 판결)

4) 법원의 판단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② 피고 학교법인들은 특정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월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32조의4 제1, 2항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도한 이월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피고 학교법인들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III. 등록금환불소송

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 학교법인들은 원고들로부터 재학계약상 등록금을 받았음에도 재학계약이 정하지 않은 비대면수업 방식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을 폐쇄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교육시설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학교법인들의 재학계약상 교육서비스 제공의무는 불완전이행 내지 이행불능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 피고 학교법인들이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비대면수업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 학교법인들의 교육서비스 제공의무가 불완전이행 또는 이행불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학교시설의 제한적 운영은 원고들을 비롯한 재학생들과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교육시설 이용 제한은 안전배려의무의 적절한 이행이며, 재난 상황에서 방역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지침 등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학교법인들에게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

III. 등록금환불소송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주장

- 피고 학교법인들의 등록금청구권의 범위는 교육서비스 제공의무의 이행불능 한도 내에서 감축되므로, 피고 학교법인들은 등록금 중 일부를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학교법인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재학계약상 교육서비스 제공의무가 이행불능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

끝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일본의 대학 교육에 미친 영향



2023년 11월 4일
한일/일한 대화 제6회 기획
미츠모토 시게루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교육학연구원)

들어가며

- 2020년 코로나 팬데믹(COVID-19 Epidemic) 속에서 대학은 대면 수업을 비롯한 많은 활동이 제한되었다. 이것은 '대학이 유지해야 할 상태'나 '대학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는 문제를 관계자들에게 던졌다.
- 2023년, 대학 캠퍼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그렇지만 에피데믹은 종식하고 있지 않다. '제9파'의 감염자수는 과거 최고라고 한다. 일련의 코로나 대책이 과학적 지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큰 문제다.
- 본 보고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속의 일본 대학에서 전개한 2020년 학비감액운동을 되돌아보고 그 의의와 과제에 대해 고찰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일본의 대학 교육에 미친 영향

1. 2020년 학비감액운동

2. 학비감액운동의 의의

3. 코로나 팬데믹이 밝힌 고등교육의 과제

CPC리플레 No.17

エコ-する(知)

2020年の大学危機

—コロナ危機が問うもの—

光本 滋

コロナ危機の中、大学の在り方を問う!
大学の現状から見えて来るものは何か。オンライン、
対面授業や教育費負担の問題に鋭く斬り込む。
大学問題のエキスパートが解説した好著。

クロスカルチャー出版

2020년 학비감액운동

코로나 팬데믹(COVID-19 Epidemic)속의 일본 대학

- 2020년 3월 24일, 문부과학성 통지(학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도 좋다는 것, 60 시간을 초과하여 온라인 수업으로 취득한 학점도 졸업 요건에 포함할 것)
- 4월 7일, 정부는 7 도부현에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16 일에는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 전국 대학에 온라인 수업 실시를 위해 1학기(4월 1일~) 시작을 늦추거나, 캠퍼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움직임이 확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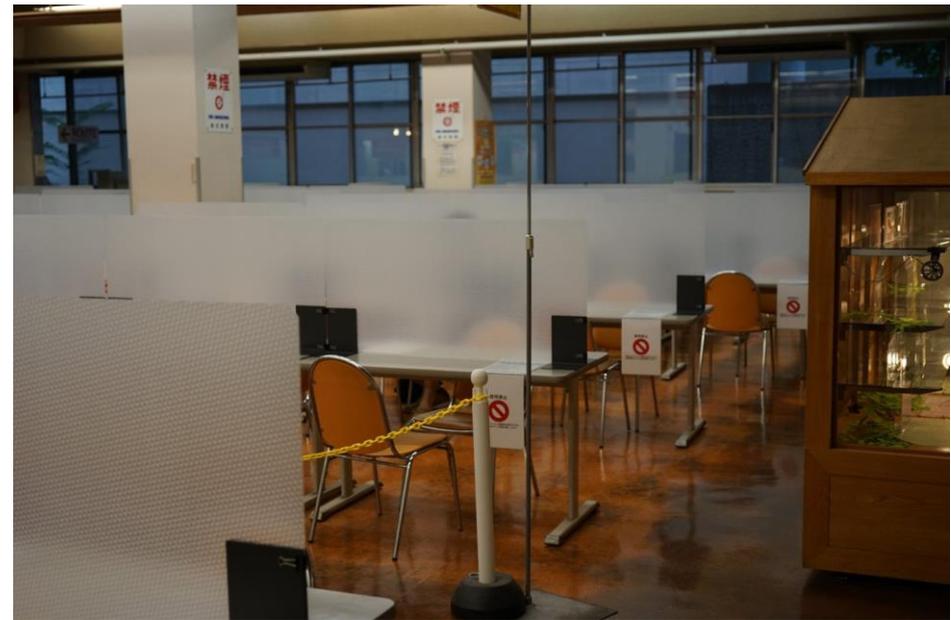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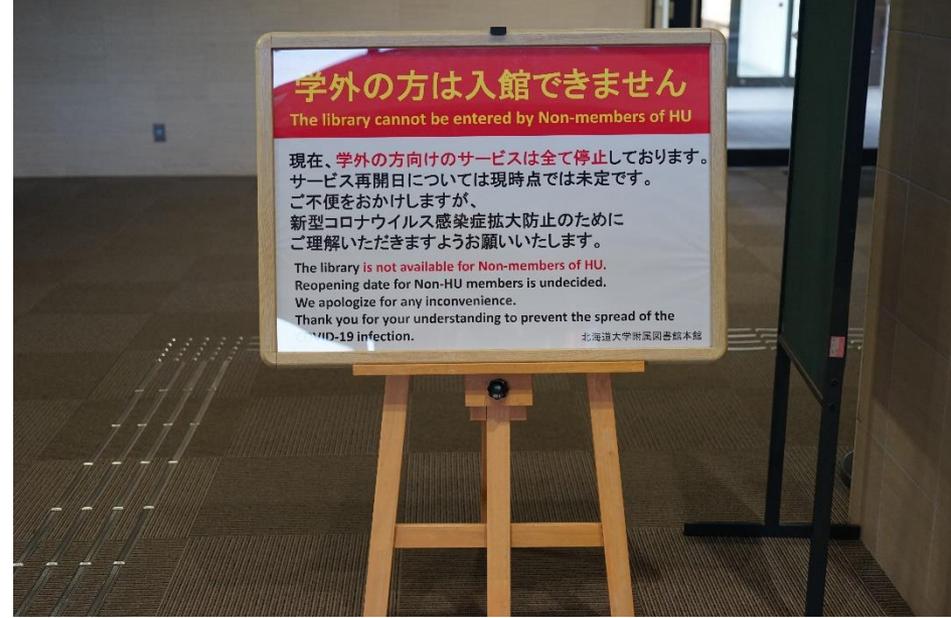
- '전면 대면'9.7%, 대면과 원격 '병용'30.2%, '원격수업 만'60.1%
회답수1066개교(고등전문학교 포함). 문부과학성 '대학 등 수업 실시 상황' 2020년 6월 1일 기준



미츠모토 촬영
(2021년 4월, 게이오기주쿠대학 미타캠퍼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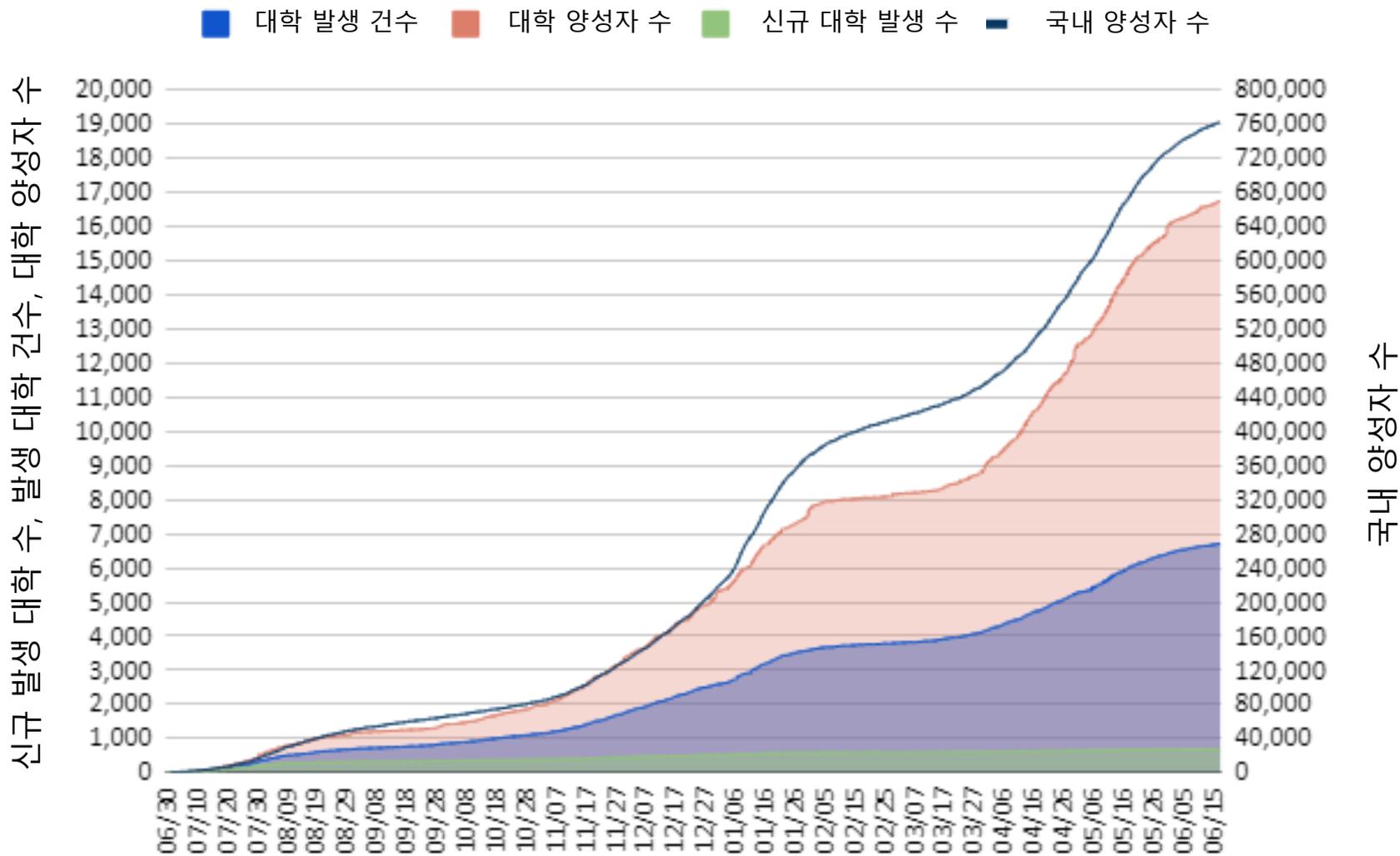
왼쪽: 교실의 온라인 설비 우상: 사무실 우하: PC방
미츠모토 촬영(2021년 4월, 와세다대학 토야마캠퍼스)



왼쪽: 공학부 화장실(개수공사중) 우상: 도서관 우하: 식당
미츠모토 촬영(2020년 9월, 2021년 2월, 홋카이도대학 삿포로 캠퍼스)

신규 발생 대학 수, 발생 대학 건수, 대학 양성자 수, 국내 양성자 수(누계)

※7월 1일 이후



학생의 요구운동

- 4월 5일 아오야마가쿠인대학
 - 4월 11일 리츠메이칸대학
 - 4월 13일 와세다대학
 - 4월 14일 아키타공립대학, 다이토분카대학
 - 4월 15일 타마미술대학 등 4개 대학
 - 16일 이후는 건수가 급증, 1주일 뒤인 4월 22일까지 79개 대학. 4월 29일까지 186개 대학, 5월 5일까지 207개 대학(사립 195개 대학, 국립 8개 대학, 공립 4개 대학)
- 초기에 운동이 시작된 것은 도쿄, 교토 등 도심부의 대규모 대학과 미술계 대학이었다.

여론의 관심

- 4월 하순까지 언론의 관심은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학생에 대한 강한 비난 여론 쪽이었다

3월 해외 졸업여행에서 귀국한 학생이 클러스터의 발생원이 된 것을 보도되어 해당 대학의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키지 않는다' 등 비난이 확대되었다.

- 4월 22일, 학생단체 '고등교육무상화 프로젝트FREE'(이하 'FREE') 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 '학생 13명 중 1명이 퇴학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교도통신을 통해 배신되어, 전국지 등에서 다루지며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산했다.

학생 요구의 전개

- 경제적 요구 : 급부금 지급, 학비 감액·반환, 지불기한 연장 등
- 시설의 이용 : 도서관 등 시설을 가능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온라인 수업 수강 환경을 중심으로 교육 환경 정비
- 수업 외 활동·취직 활동을 포함하는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
- 정보 공개

경제적인 요구를 내걸고 있는 것은 공통되지만, 조건 정비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요구도 초기 단계부터 나타난다.

대학의 대응

- 4월 16일, 슈지츠대학이 3만엔을 급부할 것을 발표
- 4월 21일, 메이지가쿠인대학이 5만엔을 급부할 것을 발표

이후 많은 대학이 학생에 대하여 급부금을 지급하게 되어갔다.

일본사립대학교직원조합연합 조사에서는 학생에 대한 급부액이 50,000엔인 경우가 102개교 중 72개교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30,000엔이 14개교. 최고액은 10만엔(3개교). 일본사립대학협회가 설치한 사학교등교육연구소가 진행한 조사에서도 같은 경향

- 학생에 대한 급부금은 대부분이 '교육환경 정비' '학생 지원' 등 명목
- '학비 반환·감액'을 한 대학도 소수이지만 존재

- 구시로공립대학 : 수업료 1 개월분(20000 ~ 65000엔)을 반환
- 와코대학 : 실험 실습비를 40% 감액
- 도호쿠예술공과대학 : 수업료에 포함되는 시설정비비 해당분을 학생에 반환
- 교토예술대학 : 시설정비비 일부를 반환

학생과 대학의 교섭

대학 측에 서명을 제출

리츠메이칸대학, 조치대학, 메이지대학, 토요대학, 세이조대학, 독교대학, 다이토분카대학, 도시샤대학, 타마미술대학, 가나가와대학, 미야기가쿠인여자대학, 도쿄가쿠게이대학, 테이쿄대학

파란색 글씨 대학에서는 서명 제출 후, 대학과의 교섭(메일 주고받음, 대면)이 이루어졌음

학생이 서명을 제출했지만 대학 측이 수령을 거부

오카야마대학(서명에 학교 외부인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 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정부의 지원책

- 3월 26일, 문부과학성은 대학 등에 대해 수업료 등의 감면, 납부 시기의 유여 등, 학생에 대한 지원의 검토를 요청
- 4월 30일, 2020년도 제1차 보정 예산 '가계가 급변한 가정의 학생에 대한 지원'(국립 4억엔, 사립 3억엔)
- 6월 12일, 제2차 보정 예산 '곤궁학생 등에 대한 지원'. 각 대학 등이 실시하는 독자적인 수업료 등의 경감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국립 45억엔, 사립 94억엔)
- 또한, 제1차 보정 예산의 예비비에서 '학생지원긴급급부금' 530억엔을 지출. 주민세 비과세 가구의 학생에게 20만엔, 그 이외의 학생에게 10만엔을 지급

→각각 의의는 있지만, 재정기반이 약한 대학은 수업료 등의 경감 조치를 실시할 수 없다. 수속이 번잡하기 때문에 급부금을 포기한 학생이 적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학비감액운동의 의의

학생의 문제 제기

1.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의 수업료 등의 감액,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2. 학비(수업료, 시설정비비, 교육충실비 등 각종 명목의 학생의 부담금)의 내용·수준의 적합성
3. 고등교육 비용을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4. 고등교육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 학생의 요구에는 1이 공통적으로 있고, 2~4의 요소가 혼재하고 있었다
- 학생들은 다른 대학의 서명 문서를 보거나 상호 교류함으로써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인식을 깊게 만들었다.

대학 측의 주장

1. 학생의 교내 출입금지는 감염증 대책으로서 필요한 조치이며,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학생이 부담하도록 하는 학비는 졸업(학위 취득)까지 기간 전체에 걸쳐 드는 비용의 총액을 재적 기간으로 나눈 것이며, **이용료 성격을 띤 것이 아니다**
3. 온라인 수업 환경 정비를 위해서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4. 실습 및 실기 과목 등 긴급사태선언 하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형태의 교육은, 실시 조건이 정비된 뒤 해 나간다.
5. 가계의 급변 등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취한다**

→ 이들은 학비를 감액·반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주장되고 있다. 그 중에는 충분한 검토와 합의 형성을 거치지 않은 것도 있다(특히 2)

학생들의 통일 요구운동

- 학비감액서명운동을 추진한 학생들은 SNS(Twitter, LINE)를 통해 연대하여 노하우 공유와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
- 전국적인 운동은 ①온라인 서명, ②제언·정부에 대한 요구, ③기자 회견 등 ①·②에 관한 정보 발신
- ①온라인 서명은 41개교의 발기인의 연명으로 “일률 학비 반액을 요구하는 액션”의 이름으로 실시

요구사항은

1. 국가 예산으로 일률적인 학비 반액화

2. 대학 등에 대한 예산 조치

- 서명수는 10663건(4/24 ~ 4/29)
- ②는 긴급제언(4/22), 내각총리대신·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요청서(4/30), 문부과학성에 대한 취지 설명(4/30). 일본기자클럽에서의 회견(5/1)

4/24~ ご署名お願いします!

一律学費半額

#大学にも予算を

#COVID19学費問題

1. 국가 예산으로 일률적인 학비 반액화를 요구합니다
 - 경제적 영향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대량으로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대상이 좁고 심사에 시간을 취하는 현행의 제도가 아니라, 국공사립의 차이, 과정과 학년의 차이, 국적의 차이에 관계없이 학비 반액을 실현하는 일률적인 감액을 요구합니다.
2. 대학 등에 대한 예산 조치를 요구합니다
 - 국가는 신형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증가한 대학 등의 비용을 보전하십시오. 대학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설비 투자와 교직원의 잔업대 등 예기치 않은 부담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휴관에 수반하여 서적을 대여하는 시스템을 각 대학에서 정비할 때, 국가가 이 비용을 보상해 주십시오.

일률 학비 반액을 요구하는 액션 <https://www.change.org/u/1080446917>

대학단체의 견해

- 국립대학협회·공립대학협회·사립대학연합회가 연명하여, 유학생을 포함한 정규 학생에 대한 급부금을 확대할 것, 각 대학이 가계가 급변한 학생에 대하여 긴급히 실시하는 수업료 면제를 지원할 것, 학생 자택의 통신 환경 정비 및 통신료 부담에 대해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2020년 5월 11일)
- 학생의 과정이나 소속 조직이 무엇인지를 떠나서 공비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점은 학생 측 요구와 공통된다
- 그러나 이 요망서와 학생 측 요구 간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 학생 측이 공비 지원을 요구하는 데 이르게 된 과정에서 끊임없이 학비 수준과 내용을 문제시 해온 데 반해, 대학단체는 그것들을 문제시 하지 않고, 요망서가 요구하는 학비 감액에 대한 공비 지원은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학비감액운동의 의의

(1) 여론에 대한 영향

-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주목
- 학생의 활동이 (과도하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목

(2) 학비감액의 실현

- 많은 대학이 학생에게 급부금을 지급. 일부 대학에서는 수업료 등 학비 반환 실현
- 이들은 학비감액운동 없이는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3) 대학의 의의, 학생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심화

- 이들은 학생이 자신의 요구의 정당성을 고찰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심화되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밝힌 고등교육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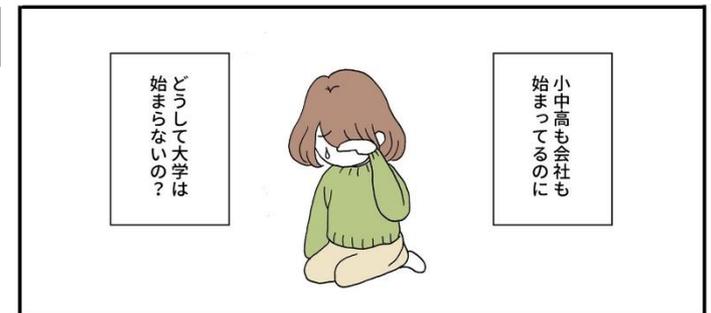
(1) 학생의 사회적 배제

- 팬데믹 초기, 특히 학생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
- '학생은 제멋대로' '자기 사정으로 진학했기 때문에 우대해서는 안된다'

(2) 대학에서의 학생의 배제

- 많은 대학에서는 의사결정에서 배제 (시설 이용자, 재학 계약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 학생의 권리를 확인, 확립하는 것이 과제



- 현대 대학에는 인권으로서의 고등교육을 보장하는 기관이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권으로서의 고등교육의 내용은**(단편적인 것도 포함) **학생의 요구 속에 나타난다.** 이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해 나가려면 학생 자신이 대표자를 세워 대학 당국, 정책 당사자와 교섭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동시에 대학은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사회의 문제를 분석·해결책을 찾아 실천하는 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하는 시민의 육성**(**'혁신적인 교육방법'**(유네스코 1998))을 과제로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교육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학내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도 대학의 책임이다. 일본의 대학에 부족한 것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이 아닐까?

- 2020년 학비감액운동에는 고등교육의 권리성을 학습자의 관점에서 문제 제기하여, 또한 유네스코가 말하는 '비판적인 교육방법'에 통하는 학습과 실천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 대학은 이러한 운동의 의의를 이해하고 자신의 교육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해야 할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